定　　款

金海金氏石城公派宗會

2025. 4. 23. (改正)

第一章 總則

제1조 : 명칭

본회는 金海金氏石城公派宗會라 칭한다.

제2조 : 사무소
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特別市에 둔다.

(단, 부득이 한 경우 서울특별시 외에 둘 수도 있다.)

제3조 : 목적

본회는 선조를 숭봉(崇奉)하고 종족(族)간의 친목(親)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(目的)으로 한다.

第二章 會員

제4조 : 회원의 자격

본회의 회원은 金海金氏石城公派(파조:永字純字)의 후손으로 한다.

第三章 任員

제5조 : 임원

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(이사)
2. 부회장 20인 이내(수석 부회장 1인 포함: 이사)
   (단, 수석 부회장은 차기 종회장으로 선임한다.)
3. 사무총장 1인
4. 이사 40인 이상(이사라 함은 각 문중 대표로서 世字應字, 世字輔字, 世字發字, 世字汀字, 世字彦字, 문중에서 안배한다.)
5. 감사 2인

제6조 : 고문 추대

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공헌한 사실이 현저(顯著)하거나, 특히 모범이 될 만한 종원(宗員) 중 고문을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7조 : 임원의 선출

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

수석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인 문중대표의 선임은 총회의 결의로 회장에게 위임하여 문중별로 안배하여 선임할 수 있다.

(단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)

제8조 : 임원의 임기

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(連任)할 수 있다.

1) 단, 결원(缺員)으로 인한 보선(補選)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2) 단, 회장 유고시는 자동 수석 부회장이 승계하여 승계 기간을 차기로 보아 1회에 한하며 연임 할 수 있다.
3) 보선은 확대 집행부 회의(회장단, 사무총장, 감사, 이사인 문중 대표)에서 한다.

제9조 : 임원의 임무
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, 이사회 기타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 그 직을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. 수석 부회장이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시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.
3. 사무총장은 일반 업무 및 모든 행정을 담당한다.

4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의결한다.

5. 감사는 업무 및 재정과 행정을 매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.

第四章 事業

제10조 : 사업

1.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1) 위선사업(爲先事業)

2) 부종사업(扶宗事業)

3) 계도사업(啓導事業)

4) 파보발간사업

5) 書院 및 齋舍 신축 등 관리에 관한 사업

第五章 總會

제11조 : 총회의 구성

총회는 제4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2조 : 총회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1.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회장이 소집한다.

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 1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.

(단,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불응 할 시는 요구자 대표가 소집 할 수 있다.)

제13조 : 의결 정족수

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(단, 정관개정, 재산처분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

의결한다.

제14조 : 총회의 의결사항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이 개,폐.(단, 정관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기구에서 안건 상정심의 결과 승인, 개폐, 의결 된 것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.

2. 예산, 결산의 접수

3.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

第六章 理事會

제15조 :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
이사회 의결기구라 함은 안건상정, 심의 결과 승인을 칭한다.

(단, 고문,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)

제16조 : 이사회의 소집

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. (사무총장은 회 20일 전에 통보한다.)

제17조 : 이사회의 의결사항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본회 운영상 필요한 제반사항

2. 안건 상정, 심의결과 승인, 개폐

3. 의결 된 것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.

(단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는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.)

제18조 : 의결 정족수

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第七章 財産 및 會計

제19조 : 재정

본회의 재정은 헌성금(獻誠金)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20조 : 운영비

본회의 운영비(運營費)는 전조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21조 : 회계연도

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 하고 결산 이월금은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한다.

제22조 : 예산 및 결산

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회장이 매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, 승인 받도록 한다.

第八章 賞罰

제23조 : 시상 및 징계본회

회원(종원)으로서 宗事(종사)에 헌신적이고 본회 발전에 지대(至大)한 공헌이 있는 문중 또는 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결의에 의하여 시상하고 본회의 위상을 손상하게 한 회원은 집행부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(단, 시상규모 : 은수저 1벌 기준, 종회장: 전별금 없음)

附則

제1조 : 본 정관(회직)은 198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: 15차 개정 시행일 기재 생략.

제3조 : 이정관은 2009년 4월 26일부로 시행한다.

제4조 : 이 정관은 2018년 이사회 의결 기구에서 일부개정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5조 : 이 정관은 2025년 정기총회 의결 기구에서 제8조 임원의 임기를 개정,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